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25
----------	-----

2025. 4. 30.(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정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정일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진흥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에서 불필요한 인용법령 삭제(안 제1조, 안 제2조)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정비
(안 제6조~안 제10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개정이유 검토

- 현행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음
- 또한, 2020년 6월 9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어 본 조례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자치조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서 인용법령을 삭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3호의 불필요한 인용규정을 삭제함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조례의 목적에서 인용규정을 삭제하여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에 있어 인용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은 타당한 조치임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함
 -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함
- 이에 위원회 설치(위원회 구성 포함), 위원회 기능, 회의, 수당 순으로 규정된 현행 조례를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수당 등의 순으로 정비한 것으로 입법형식 상 바람직한 조치라 보여짐

다. 종합 검토의견

-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정보화교육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내”를 “조례는 충청북도내”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를 “이란”으로 한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계획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마다”를 “매년”으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충청북도교육청”을 “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아니”를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충청북도교육청”을 “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관계관”을 각각 “관계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화 교육”을 “정보화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위촉직”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으로, “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회의)”를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개의(開議)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를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제4조**”로, “**심의를**”을 “**심의의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센터 활용**)”을 “(**관련시설 등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를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거점학교의 지정·운영**)”을 “(**중점학교의 지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교육지원청에**”를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충청북도 내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생략)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4. ~ 6. (생략)	제2조(정의) ----- -----.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 이란 ----- ----- ----- ----- -----.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유아	제3조(적용범위) ----- ----- ----- 「유아교육법」

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해마다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전담부서 설치)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매년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전담부서 설치) -----

----- 교육청-----
-----.

제7조(위원회 구성) <삭 제>

① -----

----- 경우 -----

----- 안 -----.

③ -----

위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
과할 수 없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창
의특수교육과장, 충청북도교
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2. 정보화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및 전
문가, 교사, 공공기관, 단체 및
센터 등의 업무 관계관

3.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업무 관계관

4. 그 밖에 정보화 교육에 관하
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④ (생 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
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
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
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
관으로 한다.

-----.

1. 교육청 -----

2. -----

----- 관계자

3. -----

----- 관계자

4. ----- 정보화교육-----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
-- 하고 -----
---. <단서 삭제>

<삭 제>

<신 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신 설>

위원회는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2. (생 략)

제8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기본계획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6조(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설
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정보
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 다음 -----

---.

1. 2.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적위원 --
----- 개의하고 ---

-----.

③ -----

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조 (생 략)

제10조(센터 활용)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11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진흥을

경우

④ -----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제4조-----
----- 심의의 경우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조(관련시설 등 활용) -----
----- 충청북도지사
----- 충북
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
도청소년종합진흥원-----
-----.

제12조(중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 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중점학교
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 (생략)

하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장 배상호